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씨제이프레시웨이(주)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 협력 제휴에 따라서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급식문화 조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먹거리 생태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문화 선도 및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향하며 당사자 간의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본 협약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 자원 교류 및 상호 이용
: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교육 및 식문화 형성을 위해 교육 및 인적자원을 지원 한다.
2. 정보교류
: 친환경 식자재의 주기적인 시황정보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다양한 친환경 메뉴 및 간식제안을 통한 먹거리 질을 높인다.
3. 홍보
: 안정적인 친환경 식자재를 확보한 당사를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에 안내 한다
4.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 (분쟁해결)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청탁금지법의 준수) 당사자 간의 협약이행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밀유지)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기타 본 협약사항이행이 곤란한 경우 일방이 협약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취소 신청이 없으면 매년 자동 갱신된다.

제8조 (법적구속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4조와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 협약 당사자는 위 내용과 같이 협약하고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9월 24 일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종석 (인)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성희 (인)

특약사항

1. 씨제이프레시웨이는 당사를 통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원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의 원활한 식자재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2. 상호간의 생태 친화보육을 지향하며 친환경 식문화 형성을 위해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건강한 식문화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하여 적극지원한다.
3.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평가제 인증과 연계된 다양한 교직원 교육을 제공한다.
4. 친환경 식자재 시황 정보 및 현황을 상호간 교류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5. 씨제이프레시웨이 영유아전용 브랜드인 아이누리는 친환경 및 유기가공품(간식 및 기타) 납품 및 개발에 힘쓰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원은 해당 상품 사용과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6.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와 씨제이프레시웨이 아이누리는 영유아의 친환경 친화보육의 사회적 가치향상 및 공헌에 힘쓴다.